

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20-113
----------	--------

제출일 : 2020. 8. 20.

제출자 : 마포구청장

1. 제출사유

-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·지출계획에 이를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 의거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함

2. 주요내용

- 중소기업육성기금
 - 코로나19로 인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 수요가 증가하여 편성 예산의 약 90%를 소진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함

(단위 : 천원)

구분(편성목)	변경전(기정액)	변경후(경정액)	증감(△)
용자금	3,000,000	4,000,000	1,000,000

3. 근거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(기금의 설치)

4. 첨부

-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1. 기금개요

- 설치근거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
- 설치년도 : 1993년
- 재원조성 : 출연금, 이자수입 등
- 기금용도
 - 중소기업의 시설자금, 운전자금 용자
 -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
 - 그 밖의 기금의 관리·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

2.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○ 수입계획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	당초예산	증감(△)	최종예산	비고
장관항	목				
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		20,000	1,000,000	1,020,000	
	720 내부거래	20,000	1,000,000	1,020,000	
	721 전입금	20,000	1,000,000	1,020,000	
	721-03 기타회계 전입금	20,000	1,000,000	1,020,000	전입금 10억 증액

○ 지출계획

(단위 : 천원)

정책	단위	세부	편성목	통계목	예산현액	증감(△)	변경후잔액	비고
지역 중소기업 활성화	중소기업 지원사업 (중소기업 육성기금)	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	용자금 (501)	통화금융 기관용자금 (02)	3,000,000	1,000,000	4,000,000	용자금 10억 증액